대구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0나32724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 판 경 과

대구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0나327247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3 선고 2019가단55856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원, 이성관

피고, 피항소인1. 주식회사 B

2. 주식회사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름길 담당변호사 박경환

변론 종결2023. 4. 6.

판결 선고2023. 4. 20.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3. 선고 2019가단5585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과 D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6. 10. 체결된 양도계약을 9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 사이의 도급계약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 다른 회사들의 경우에도 '주식회사'는 처음 한 번만 표시한다)는 2016. 1. 25.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4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경북 고령군 E 공장신축공사(이하 'E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6. 6.경까지 D의 의뢰에 따라 E 신축공사현장을 포함한 10곳의 공사현장에서 판넬 공사를 하였으나, D로부터 합계 9,4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들과 D 사이의 도급계약 및 이에 따른 정산합의

1) 피고들은 2015. 9. 20.경 D에 공사대금을 39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경북 칠곡군 F 공장 신축공사(이하 'F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2015. 12. 16.부터 2016. 4. 12.까지 공사대금 중 합계 12억 1,000만 원을 선급하였다.

2) F 신축공사는 2016. 5.경 D의 귀책사유로 중단되었고, D은 2016. 6.경 피고들과 F 신축공사를

타절하면서, 선급 받은 공사대금 12억 1,000만 원에서 기성 공사비 4억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억 5,000만 원(= 12억 1,000만 원 - 4억 6,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D은 위 7억 5,000만 원의 변제를 위해 G으로부터 받을 E 신축공사 공사대금 중 7억 5,000만 원을 양도하기로 하여, 2016. 6. 10.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하고,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의 양도계약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약정서

갑: G, 을: D, 병: 피고 주식회사 B

G(이하 '갑'이라고 한다)이 개발하여 L에게 매매할 E 신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갑과 D(이하 '을'이라고 한다)이 41억 원에 도급계약을 맺어 을이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갑이 당 해당 군청으로부터 준공을 승인받지 못해 도급공사금액을 수령하지 못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병'이라 한다)으로부터 차용한 12억 1,000만 원 중 을과 병이 합의한 7억 5,000만 원을 갑이 L에게 상기 소재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병에게 직불 처리할 것을 확약합니다.

3) 피고 B은 2016. 10. 25.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G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4,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여 G에 대한 7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포함한 D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9,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면탈을 위한 통정허위표시로써 무효이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있었던 2016. 6.경 또는 원고가 D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판결(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54002)이 확정된 2017. 10.경, 늦어도 D의 대표이사인 M이 관련 형사사건(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형제3656호)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2018. 3. 28.경에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9. 4. 9.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2행의 '증인 K' 앞에 '제1심'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앞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D에 대하여 9,4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당사자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관하여, 피고들은 피고 B만이 그 당사자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2382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F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공동도급인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위 도급계약의 타절 과정에서 D이 피고들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정산하기 위해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관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고들의 상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 C은 이 법원에서 2023. 2. 28. 제출한 준비서면 전까지는 자신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참조).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D의 재산상황 가) 적극재산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D의 적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49,622,21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예금채권(N조합, O은행)	8,022,218	을 4호증의 2, 3
2	G에 대한 E 신축공사 공사대금 중 1차 중도금 채권	1,100,000,000	을 4호증의 1
3	G에 대한 P 공장신축공사 등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4,000,000	을 4호증의 12~15
4	Q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37,600,000	을 4호증의 7~9
합계	1,249,622,218		

(2) 피고들은 D에게 적극재산이 더 있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들은 D의 G에 대한 E 신축공사 공사대금 중 2차 중도금 채권 800,000,000원도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3호증,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준공이 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1, 2차 중도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었던 사실, D의 대표이사 M은 관련 형사사건(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8형제3656호)에서 '(E 신축공사는) 준공이 나지 않아 마무리를 하지 못하던 중 2016. 9. 초순경 G의 대표이사인 R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그때까지 공사대금을 계속 못 받고 있다가, 이후에 E 건물을 인수한 사람으로부터 11억 원 정도를 받았다. 위 11억 원 중 7억 5,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주었고, 나머지는 부채 등을 해결하느라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중 1차 중도금 1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들은 추가공사에 따라 D의 Q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311,700,000원(= 기존 공사대금 237,600,000원 + 추가 공사대금 74,1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추가공사에 관한 내역서는 2016. 8. 23.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추가공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추가공사에 따라 D의 Q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위와 같이 증액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들은 D이 2015. 10. 20. S와 공사대금을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T정비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일부 시공한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4호증의 24, 25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은 2016. 7. 30. 위 공사에 대한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 위 공사포기각서 작성 이전부터 D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들은 D이 U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장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대금 640,000,000원 중 일부 시공한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스스로도 위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피고들은 D이 주식회사 V에 대하여 846,505,775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을 4호증의 30의 기재에 의하면 D은 2015. 2.경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V에 대하여 89,062,363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전에 이미 D의 채권자들이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청구금액 합계 72,276,400원)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37,485,764원)을 받아 위 각 결정이 V에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⑥ 피고들은 D이 W에 대해 2,052,36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을 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극재산

갑 2, 4, 5, 6, 13~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D의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이 합계 981,193,757원인 사실이 인정된다(피고들은 아래 채무 중 일부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	94,000,000	갑 제2호증(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54002)
2	J	134,722,400	갑 제4호증(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54842)
3	주식회사 H	87,703,400	갑 제5호증(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가단2985)
4	I	121,475,927	갑 제6호증(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18757)
5	주식회사 X	170,426,300	갑 제13호증(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53849)
6	Y	22,440,000	갑 제14호증(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9039)
7	Z	35,520,000	갑 제15호증(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12578)
8	AA	1,320,000	갑 제16호증(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소30389)
9	주식회사 AB	8,294,000	갑 제17호증(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소39454)
10	AC	6,027,795	갑 제18호증(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소40812)

1	원고	94,000,000	갑 제2호증(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54002)
11	주식회사 AD	40,700,000	갑 제19호증(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1735)
12	AE	3,300,000	갑 제20호증(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소22118)
13	AF	11,165,000	갑 제21호증(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소22637)
14	AG 외 2	33,695,340	갑 제22호증(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18610)
15	AH	37,000,000	갑 제23호증(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20644)
16	주식회사 AI	85,585,595	갑 제24호증(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21906)
17	AJ 외 12	40,480,000	갑 제25호증(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51652)
18	주식회사 AK	47,338,000	갑 제26호증(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단4083)
합계	981,193,757		

3) 판단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D의 적극재산은 합계 1,249,622,218원, 소극재산은 합계 981,193,757원이었으므로, D은 G에 대한 75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고들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적극재산이 합계 499,622,218원(= 1,249,622,218원 - 750,000,000원), 소극재산이 합계 981,193,757원이 되어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D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D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의 정당한 채권자로서 D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자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이처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9,4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한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채권양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채권양수인인 수익자 등이 제3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는 등으로 양도채권이 소멸된 경우에,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등을

상대로 그 채권양도의 취소와 함께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공동채권양수인 중 한 명인 피고 B이 2016. 10. 25. G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이상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광진

판사정주희

판사유진홍

별지